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700
----------	------

2024년 4월 25일
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4월 3일, 광항기 의원 외 26인

나. 회부일자: 2024년 4월 8일

다. 상정일자: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4년 4월 25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광항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.

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은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바, 시민 참여 유도과 확대를 위해 시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함.

나. 주요골자

-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함(안 제7조제3항).
-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, 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(안 제7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: 신·구조문대비표

4. 검토보고 요지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, 지원 대상에 사업의 핵심 주체인 시민이 제외되어 있음.

근원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바, 시민 참여를 유인하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바임.

-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13조(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)와 제112조제2항 제4호나목에 따르면 ‘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나, 조례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’라고 규정하고 있는바,

소관부서는 동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내용·기준·방법 등을 정하는 등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임.

「공직선거법」

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4. 직무상의 행위

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

제113조(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) ① 국회의원·지방의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의 장·정당의 대표자·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기부행위(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를 포함한다)를 할 수 없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·지시·권유·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사업 참여 실적, 횟수,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과 같은 혜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,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